

2

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예산 전용 보고

가족다문화담당관: 임지훈 ☎2133-8680 가족권익보호팀장: 최정은 ☎8696 담당: 류가영 ☎8697

□ 추진배경

- '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입소자 보호비용 중 동반자녀 양육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5
- 사업명 :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
- 사업내용 :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지원
- 사업예산('22년) : 15,233천원(시비 100%)

□ 예산전용계획

○ 전용사유

- 보호시설 입소자 및 동반가족 지원사업 중 미취학 동반자녀 양육비 예산 부족분 발생(신청에 의한 지원)에 따라 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
※ 동반자녀 양육비 : 1인당 월 10만원(아동 학습준비물, 어린이집 입학금 등 용도로 사용)

- 전용내용 :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 '사무관리비(201-01)'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내 '사회복지사업보조(307-11)'로 전용 (전용일자: '22. 10. 31.)

- 전용금액 : 2,5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예산과목		예산현액	전용금액		전용 후 예산현액
		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	다문화 건강가정 조성	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	민간이전	사회복지사업보조	15,233	2,500	-	17,733
		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29,070	-	2,500	26,570